

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1. 5. 12 선고 2020가단54369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A

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준상

피 고 B

소송대리인 변호사 손한서

변 론 종 결 2021. 3. 31.

판 결 선 고 2021. 5. 12.

주 문

1.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/2 지분에 관하여 2016. 9. 19.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.
2. 피고는 C에게,
가.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1/2 지분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당진등기소2016. 9. 26. 접수 제4335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,
나. 별지 목록 제2항 내지 5항 기재 부동산 중 각 1/2 지분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등기과 2016. 9. 23. 접수 제3858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3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인정사실

다음 각 사실은 갑 제1 내지 4호증,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천안시동남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.

가. 원고는 소외 C에게 2008. 11. 10.경부터 2009. 6. 30.까지 수차례에 걸쳐 합계 2억 1,000만 원을 대여하였고, 이에 원고는 2017. 9. 27. C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가합905 투자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, 위 법원으로부터 2018. 5. 18. ‘피고(C)은 원고에게 2억 1,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. 11. 16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’는 내용의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받았으며, 위 판결은 2018. 6. 9. 확정되었다.

나. C은 2016. 9. 19. 배우자인 피고에게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¹⁾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(이하 ‘이 사건 부동산’이라고 한다) 중 1/2 지분을 증여하였고, 2016. 9. 23. 및 같은 달 26.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.

다. 피고는 2020. 7. 29. C을 상대로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2020드단1148호로 이혼 등 소송을 제기하였고, 이에 위 법원은 2021. 1. 14. ‘피고와 C은 이혼하고,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를 지정한다’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, 위 판결은 2021. 3. 3. 확정되었다.

2.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

피고는, 원고가 2017. 9.경 C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무렵에는 C에 대한 재산조회를 함으로써 이 사건 증여계약을 알게 되었을 것이므로, 그로부터 1년이 도과하여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이 도과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.

그러므로 살피건대,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서 그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‘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’은

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,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말한다. 이때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,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. 사해행위의 객관적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는 없고, 그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(대법원 2014. 3. 27. 선고 2013다79320 판결 참조).

그런데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2017. 9.경 또는 이 사건 소 제기 시부터 1년 이전에 이 사건 증여계약의 존재 등을 알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,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.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.

3. 피보전채권의 존부 및 사해행위 성립 여부

가. 피보전채권

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원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일인 2016. 9. 19. 당시 C에 대하여 2억 1,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상당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음이 인정된다.

나. 사해행위의 성립

1) 채무자 C이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 중 1/2 지분을 자신의 배우자인 피고에게 무상으로 증여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하고,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된다(대법원 2001. 4. 24. 선고 2000다41875 판결 등 참조).

2) 이에 대하여 피고는, 이 사건 증여는 피고와 C의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서 상당한 범위 내에 있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. 그러므로 살피건대, ① 피고가 C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시점(2020. 7. 29.) 및 재판상 이혼이 확정된 시점(2021. 3. 3.)은 이 사건 증여계약일인 2016. 9. 19.과 시기적으로 상당한 차이가 있는 점, ② 피고와 C 사이에 재산분할협의서가 작성된 사실이 없는 점, ③ 피고는 2013.경에 C과 사이에 이혼 및 재산분할에 관하여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는바, 위와 같은 합의가 있는 때로부터 약 3년이 도과한 시점에서야 이

사건 증여가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볼 때,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와 C 사이에 실질적인 재산분할로서 이 사건 증여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.

3) 설령 재산분할로서 이 사건 증여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, 앞서 거시한 증거 및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G조합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, C이 이 사건 부동산 중 1/2 지분을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봄이 상당하다.

①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중 1/2 지분이 C의 유일한 적극재산이었고, 순재산으로서의 가치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58,750,000원(= 117,500,000원 × 1/2 지분) 상당인데, C이 자신의 유일한 적극재산을 피고에게 증여하면서도 C의 원고에 대한 채무 등 C이 부담하는 채무에 대한 분할이 없었다.

부동산	시가	채무	순재산
당진시 H [] I 아파트 J 동 K 호	307,500,000	260,000,000 (은행대출금 6천만원 임대차보증금 2억원) (을 제4호증)	47,500,000
서산시 L [] M [] N 동 O 호	80,000,000	390,000,000	70,000,000
서산시 L [] M [] N 동 P 호	120,000,000		
서산시 L [] M [] N 동 Q 호	120,000,000		
서산시 L [] M [] N 동 R 호	180,000,000		
합계	807,500,000	690,000,000	117,500,000

② 반면에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 중 C으로부터 증여받은 1/2 지분 이외에도 58,750,000원 상당의 순가치가 있는 나머지 1/2 지분과 대전 중구 S오피스텔 T호를 그 명의로 보유하고 있었다.

③ 피고와 C의 혼인기간 동안 피고의 가정경제 및 양육에 대한 기여와 C이 2001. 11. 8. 대전 중구

U아파트 V동 W호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2009. 9. 15. 위 부동산을 매도한 사정 등 재산 취득 및 상실 경위 등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증여는 일방적인 재산분할로서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 과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(피고는 자신이 C에게 금원을 증여하거나 C의 채무를 대신 변제해 주었고, 그 금액이 242,399,000원 상당이라고 주장하나, 피고가 제출한 예금거래내역 등 그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,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).

4.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

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, 수익자인 피고는 그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 중 1/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.

5. 결 론

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.

판사 하선화

별지

부동산 목록

1. 충청남도 당진시 아파트 동 제1층 호

[1동의 건물의 표시]

충청남도 당진시 아파트 동도로명주소 : 충청남도 당진시

철근콘크리트구조 (철근)철근콘크리트박공슬라브지붕

15층 공동주택(아파트)

지하 1층 121.048m²1층 551.483m²2층 672.938m²3층 672.938m²4층 672.938m²5층 672.938m²6층 672.938m²7층 672.938m²8층 672.938m²9층 672.938m²10층 672.938m²11층 672.938m²

12층 672.938m²

13층 672.938m²

14층 672.938m²

15층 672.938m²

[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]

건물번호 :

건물내역 : 철근콘크리트조 153.768m²

[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]

토지의 표시 : 충청남도 당진시 대 15930m²

대지권의 종류 : 소유권대지권

대지권의 비율 : 15930분의 79.716

2. 충청남도 서산시 동 제2종 호

[1동의 건물의 표시]

충청남도 서산시

동

도로명주소 : 충청남도 서산시

철근콘크리트구조

슬라브지붕 3층

근린생활시설

1층 379.49m²

2층 430.77m²

3층 430.77m²

[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]

건물번호 :

건물내역 : 철근콘크리트구조 20.894m²

[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]

토지의 표시 : 충청남도 서산시 대 52170.5m²

대지권의 종류 : 소유권대지권

대지권의 비율 : 52170.5분의 33.393

3. 충청남도 서산시 동 제2층 호

[1동의 건물의 표시]

충청남도 서산시

동

도로명주소 : 충청남도 서산시

철근콘크리트구조

슬라브지붕 3층

근린생활시설

1층 379.49m²

2층 430.77m²

3층 430.77m²

[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]

건물번호 :

건물내역 : 철근콘크리트구조 37.35m²

[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]

토지의 표시 : 충청남도 서산시 대 52170.5m²

대지권의 종류 : 소유권대지권

대지권의 비율 : 52170.5분의 59.694

4. 충청남도 서산시 동 제2층 호

[1동의 건물의 표시]

충청남도 서산시

동

도로명주소 : 충청남도 서산시

철근콘크리트구조

슬라브지붕 3층

근린생활시설

1층 379.49m²

2층 430.77m²

3층 430.77m²

[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]

건물번호 :

건물내역 : 철근콘크리트구조 37.35m²

[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]

토지의 표시 : 충청남도 서산시 대 52170.5m²

대지권의 종류 : 소유권대지권

대지권의 비율 : 52170.5분의 59.694

5. 충청남도 서산시 동 제2층 호

[1동의 건물의 표시]

충청남도 서산시

동

도로명주소 : 충청남도 서산시

철근콘크리트구조

슬라브지붕 3층

근린생활시설

1층 379.49m²

2층 430.77m²

3층 430.77m²

[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]

건물번호 :

건물내역 : 철근콘크리트구조 82.032m²

[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]

토지의 표시 : 충청남도 서산시 대 52170.5m²

대지권의 종류 : 소유권대지권

대지권의 비율 : 52170.5분의 131.106. 끝.

1) 이 사건 증여 당시 C 명의의 아산시 D건물 E동 F호가 있으나, 피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 및 압류 등으로 인하여 순재산으로서의 가치가 없으며(피고의 2021. 3. 16.자 준비서면), 위 부동산은 2018. 5. 17. 임의경매로 매각되었다.